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2. 6 ~ 12.11)

〔 2013년 도 세 입·세 출 예 산 안 〕  
〔 검 토 보 고 서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전문위원 장정옥 〕

<의안번호 제2012 - 79호>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포함)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11. 16(금)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2. 11. 19(월)

II. 2013 당초예산안 규모(군 전체) - 수정예산안 포함

가. 총괄 - (예산서안 P9)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 포함)		2012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396,690,433	100.00	395,515,767	100.00	△1,174,666	△0.29
일반회계	342,324,921	86.30	348,187,570	88.03	△5,862,649	△1.68
특별회계	54,365,512	13.70	47,328,197	11.97	7,037,315	14.87

-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7,466만 6천원이(0.29%) 감액된 3,966억 9,0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3,423억 2,492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6,264만 9천원(1.68%) 감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543억 6,551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0억 3,731만 5천원(14.87%) 증액되었음.

## 나. 세입예산 - (예산서안 P10)

(단위:천 원)

구	분	2013년 예산액 (수정안포함)	2012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369,719,331	380,245,583	△10,526,252	△2.76
지	방 세 수 입	18,245,000	17,889,000	356,000	1.99
	지 방 세	18,245,000	17,889,000	356,000	1.99
	보 통 세	17,987,000	17,639,000	348,000	1.97
	지난년도수입	258,000	250,000	8,000	3.20
세	외 수 입	42,376,637	47,057,716	△4,681,079	△9.95
	경상적세외수입	6,225,798	47,55,625	1,600,173	34.37
	재산임대수입	104,263	80,826	23,437	29.00
	사용료수입	843,525	771,216	72,309	9.38
	수수료수입	1,079,400	1,020,760	58,640	5.74
	사업수입	991,700	421,700	570,000	135.17
	징수교부금수입	384,240	381,100	3,140	0.82
	이자수입	2,852,670	1,980,023	872,647	44.07
	임시적세외수입	36,120,839	42,402,091	△6,281,252	△14.81
	재산매각수입	112,800	787,477	△674,677	△85.68
	잉여금	26,160,136	18,830,824	7,329,312	38.92
	이월금	1,415,538	1,411,701	3,837	0.27
	전입금	6,823,096	12,236,330	△5,413,234	△44.24
	용자금원금수입	60,529	60,529	0	0.00
	부담금	35,000	35,000	0	0.00
	기타수입	1,363,740	8,940,230	△7,576,490	△84.75
	지난년도수입	150,000	100,000	50,000	50.00
지	방 교 부 세	168,433,848	167,393,895	1,039,953	0.62
조	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7,236,974	9,510,000	△2,273,026	△23.90
보	조 금	133,426,872	133,394,972	31,900	0.023
지	방채및예치금회수	0	5,000,000	△5,000,000	△100.00

##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3년 예산안 (수정안 포함)	20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42,324,921	348,187,570	△5,862,649	△0.89
총무위원회	169,358,255	168,745,491	612,764	0.36
<b>산업건설위원회</b>	<b>172,966,666</b>	<b>179,442,079</b>	<b>△6,475,413</b>	<b>△3.60</b>
경 제 과	14,166,031	26,931,229	△12,765,198	△47.38
산림녹지과	16,719,211	15,871,958	847,253	5.33
녹색환경과	14,114,529	18,555,031	△4,440,502	△23.93
건설교통과	32,230,785	29,475,792	2,754,993	9.35
도시건축과	14,293,127	17,301,837	△3,008,710	△17.39
재난관리과	15,660,117	9,085,273	6,574,844	72.36
농업기술센터	42,239,951	48,737,692	△5,497,741	△11.28
상하수도사업소	22,822,164	12,993,571	9,828,593	75.64
거창사건관리사업소	720,751	489,696	231,055	47.18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4억 7,541만 3천원(3.60%) 감액된 1,729억 6,666만 6천원으로 편성됨

## 라. 특별회계(세입,세출)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4,365,512	47,328,197	7,037,315	14.87
총무 위원회		722,685	708,480	14,205	2.00
산업건설위원회		53,642,827	46,619,717	7,023,110	15.06
기 타	소 계	26,671,725	31,349,533	△ 4,677,808	△ 14.9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30,000	708,210	21,790	3.08
	농업발전기금	13,357,320	12,733,000	624,320	4.90
	산업단지조성	6,490,946	12,573,340	△ 6,082,394	△ 48.38
	수 질 개 선	5,391,340	4,639,147	752,193	16.21
	주차장 관리	668,263	661,980	6,283	0.95
	기 반 시 설	33,856	33,856	0	0.00
공 기 업	소 계	26,971,102	15,270,184	11,700,918	76.63
	상수도지방	10,660,110	7,440,383	3,225,727	43.35
	하수도지방	16,304,992	7,829,801	8,475,191	108.24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87% 증액된 536억 4,28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Ⅲ. 세출예산 검토의견

#### 【경제과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포함)	2012예산액	증 (△) 감	
			증 감 액	비율 (%)
일반회계	14,166,031	26,931,229	△12,765,198	△47.39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6,490,946	12,573,340	△6,082,394	△48.38

-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예산액 269억 3,122만 9천원보다 127억 6,519만 8천원이 감액(47.39%)된 141억 6,6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그 주 요인은 산업단지조성운영비 및 산업단지특별회계전출금 115억 5,700만원 감액으로 기인함
-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5억 7,334만원 보다 60억 8,239만 4천원이 감액(48.38%)된 64억 9,09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1. 시장경제 활성화 (p86)

##### ▣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 381,000천원(p86)

- 이 사업은 2012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상인 자립사업,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자생력 강화로 시장경제 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13년도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 사회적기업 육성 (p90)

###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407,160천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2011년말 6개소에서 2012년말 15개소(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13)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임

###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300,000천원 (p91)

○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3.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 공단폐수 처리시설 확충 : 4,136,000천원(p94)

○ 거창산업단지에 입주할 30개업체들로부터 배출되는 공장 폐수와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1,300톤 규모 관로 7.25km 매설과 공단폐수처리장 설치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 완료되는 1단계사업비 추가확보분 국비 3,636백만원과 군비 500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임

#### 4. 에너지 관리(p95)

##### ▣ 태양광에너지 일반화 : 160,000천원(p96)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예산 증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필요함

##### ▣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 : 222,000천원(p96)

- 이 사업은 선택적 점.소등 및 가로등의 램프 불 밝기를 제어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제어기 설치 장소 등 설명이 필요함

#### 5.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p101)

##### ▣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 3,026,000천원(p102)

-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내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림녹지과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포함)	2012예산액	증 (△)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6,719,211	15,871,958	847,253	5.33

-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58억 7,195만원 8천원보다 8억 4,725만 3천원이 증액(5.33%)된 167억 1,92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1. 임산물 소득지원

#### ▣ 조림사업 지원시설비 : 965,277천원(수정예산 p101)

- 저 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용 자원 단지화 조림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 임산물유통지원 : 194,700천원(p108)

-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 및 기계화 시설지원으로 임산물 상품성 향상 및 산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전년도 예산보다 147,240천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신청자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625,000천원(p110)

- 수송대와 연계한 체험시설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목재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임

■ 산림소득 지원사업 : 277,357천원(p109)

- 친환경적인 밤 생산을 유도하고 노령목의 대체작목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밤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대비 예산이 141,312천원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 산림생태 보호

■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4ha) : 16,804천원(p114)

- 전통사찰과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로부터 주요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 400,000천원(p117)

-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활용도 사업성 등 사업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사료됨

### 3. 푸른거창 조성

■ **군립공원 관리 : 700,000천원 (p121)**

- 미륵덤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함

■ **도심속 자투리땅 나무심기 : 200,000천원 (p124)**

- 도심속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주민 여가장소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및 위치 설명이 필요함

■ **전통 마을숲 조성 : 150,000천원 (p125)**

-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녹색환경과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포함)	2012예산액	증 (△)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4,114,529	18,555,031	4,440,502	△23.93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5,391,340	4,639,147	752,193	16.21

-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85억 5,503만 1천원 보다 44억 4,050만 2천원이 감액(23.93%)된 141억 1,45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 요인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 78억 3,700만원 감소와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39억 3,900만원 증액으로 기인함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6억 3,914만 7천원보다 7억 5,219만 3천원이 증가된 53억 9,134만으로 편성되었음.

### 1. 환경관리

-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14,200천원(p131)
  -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추가설치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 ▣ 석면관리연구용역비 : 70,000천원(p132)
  - 군소유 석면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및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 1,840,201천원 (p138)

- 전년도 예산 대비 212,671천원 증액 편성한 것은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용역 산정 보고서에 의한 금액임

■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 2,649,000천원(p139, 수정안p105)

- 합천댐 상류 수물지구내 미담수 농경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연생태공간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부지매입,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

## 3. 맑은 물 관리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 22,000천원 ( p140)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 입지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제작 용역비로 편성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100,000천원 (p141)

-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4. 저 탄소 녹색성장

▣ 녹색성장 총괄 연구 용역비 : 15,000천원(P142)

ISO14001(국제환경경영시스템) 인증갱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구입 및 충전기설치 : 58,800천원 (p143)

○ 전기자동차 구입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 수질개선 특별회계

▣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 1,178,587천원(p146)

○ 생태공원 및 대곡천 생태하천등을 연계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기금사업으로 조성규모는 26,496m<sup>2</sup> 정도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광역적중장기사업을 전체 사업비의 60%이상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 건설교통과 소관 】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포함)	2012예산액	증 (△)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 회계	32,230,785	29,475,792	2,754,993	9.35
특별 회계 (댐주변지역지원)	730,000	728,210	21,790	3.08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668,263	661,980	6,283	0.94

-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94억 7,579만 2천원보다 27억 5,499만 3천원이 증액(9.35%)된 322억 3,07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7억 2,821만원보다 2천 179만원이 증액(3.08%)된 7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6억 6,198만원 보다 628만 3천원보다 증액(0.94%)된 6억 6,826만 3천원 편성되었음

### 1. 소규모 지역개발

#### ▣ 농촌환경 정비 : 650,000천원(p151)

- 소규모 시설인 마을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통해 주민일상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 사업으로 읍.면 29개소임

#### ▣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 1,220,000천원(p153)

-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규모 교량 개·보수, 영농불편해소 등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4건 임

##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 40,000천원(p155)

- 수리시설 11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함.

▣ 기반시설정비 시설비 : 1,340,000천원(p156)

- 농업활동 인구의 노령화 및 감소로 농업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는 농촌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경작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

## 3. 도로건설 및 관리

▣ 국농소 진입부채도로 : 494,816천원 (p162)

-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950,000천원 (p162, 수정안109)

-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4. 대중교통육성지원

▣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 108,300천원(p164)

- 농어촌버스 시설물개선 사업과 사업용차 전자식 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 : 949,610천원 (p165)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 40,000천원(165)



-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유사 한 것으로 이중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333,000천원(167)

- 88고속도로 확장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 물동량 증가로 인한 화물운송차량 수용을 위한 차고지 조성 5개년 사업으로 13년도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비 로 편성되었음

**5.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합천댐주변지역 지원 : 629,154천원(p169)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창읍 등 6개 읍·면 댐 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등 개발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6.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629,154천원(P169)**

-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소요 되는 인건비,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됨

## 【도시건축과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포함)	2012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4,293,127	17,301,837	△3,008,710	△17.3
특별회계 (기반시설)	33,856	33,856	0	0

-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73억 183만 7천원보다 30억 871만원이 감액된(17.3%) 142억 9,312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주 요인은 도시개발비가 39억3,100만원이 감소된데 기인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천 3,85만 6천원 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 1. 도시계획

#### ▣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 400,000천원(p175)

- 거창군 전역 804.09km<sup>2</sup> 에 대해서 매 5년마다 관리계획(기초조사, 경과조사, 용도지역, 시설변경 등)을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성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함

#### ▣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비 : 400,000천원(P176)

-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함

## 2. 도시개발

### ▣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

- 가야문화권의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 추진하는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년차별예산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3. 주거환경개선사업

### ▣ 지붕정비 사업 (P181~182)

- 슬레이트지붕 및 일반지붕 지원사업 : 1동 500천/1,000천원
-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1동 5,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 2,400천원

사업별 지원 금액이 상이한데 대한 설명과 환경녹지과 스테이트 제거사업과 어떤 구별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 친환경 건축물 건립 시범사업 : 150,000천원 (P182)

- 가조도리 보건진료소에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단열공사 강화 및 지열 등 친환경 요소 도입한 건축물을 시범으로 건립하는 사업임

## 4. 기반시설특별회계

### ▣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 33,835천원 (P184)

-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징구, 환수한 재원으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 등으로 활용하는 비용임

## 【재난관리과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액 (수정안 포함)	2012년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5,660,117	9,085,273	6,574,844	72.36

-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90억 8,527만 3천원보다 65억 7,484만 4천원이 증액된 156억 6,011만 7천원으로 72.36% 증액 편성되었으며
  - 그 주요 요인은 태풍 “산바” 전척천 수해복구공사비 31억 1,04천원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28억 2,666만 7천원 증액 된 것에 기인함

### 1. 종합상황실 관리

- 재난예방 마을방송시설 보강사업 : 70,000천원(p188)
  - 마을방송시설 보강사업 설치장소, 향후 필요개수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 재해대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 1,400,000천원(p193)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항구적으로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대상지와 사업설명이 필요함.

### 3. 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 2,393,642천원(p193)

- 미개수된 소하천을 중장기계획에 의거 정비함으로써 이수 및 치수는 물론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거창 지내천, 남상 한산천, 마리상촌천 3개소 3.16km 정비를 위해 사업임

### 4. 생태하천 조성사업

▣ 거창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4,166,657천원(p195)

- 거창 위천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2012년 이전까지 약 47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3년도 추진할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 5. 가로등 관리

▣ 태양광 LED가로등 거리조성 : 118,056천원(p196)

-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후보안등 정비 및 LED램프로 교체 : 100,000천원(p196)

-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수정안 포함)	2012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43,239,951	48,737,692	△5,497,741	△13.33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13,357,320	12,733,000	624,320	4.90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예산액 487억 3,769만원보다 54억 9,774만 1천원이 감액된 432억 3,995만원으로 13.33%가 감소되었음.

이는 예산의 증가 요인액보다 예산의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우수 급식 보급사업비가 62억원 등 감소한 요인액이 많은 것에 기인함.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27억 3,300만원보다 6억 2,432만원이 증액된 133억 5,73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금의 예산규모가 4.90%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농업 발전기금 전입금 5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예산이 계상하였기 때문임.

### 1. 가족사육 기반확충

▣ 파리 친환경 방제기 : 12,500천원 (p212)

○ 친환경 방제기 제품 설명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생꿀통 지원 : 100,000천원 (p212)

- 스테인리스 위생꿀통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 한우산업 안정대책

■ 한우 부업농 송아지 입식 이차보전금 : 300,000천원 (p215)

- 타사업과의 지원 형평성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3. 고품질 쌀생산 지원, 벼 육묘장 설치

■ 고품질 쌀생산 지원 : 벼 공동육묘장 75,000천원 (p226)

■ 벼 육묘장 설치 : 벼 육묘장 설치 지원 75,000천원 (p228)

- ⇒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 팽화미 및 쌀 분말 가공공장 설치 : 280,000천원(p229)

- 팽화미 및 쌀분말 가공공장은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주체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 원예특작 시범사업 : 276,800천원(p235)

-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6. 농촌 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 : 16,573천원(p253)

-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화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농촌지도자들의 농업인신문의 활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7.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 6,000만원(P261)

- 직거래 사업단, 쇼핑몰 운영관련 사업비로서 쇼핑몰의 운영주체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함.

## 8.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 216,500천원 (p262)

-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운영주체 등 세부설명이 필요함

## 9. 사과 생과일 주스 가공산업 육성 : 350,000천원 (p263)

- 직거래 사업단, 쇼핑몰 운영관련 사업비로서
- 사과 생과일주스 가공공장은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주체 사업내용 등 세부설명이 필요함

## 10. 거창푸드 육성 : 460,000천원 (p265)

-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거창푸드 육성사업 예산이 3억9천만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 등 세부설명이 필요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2012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22,822,164	12,993,571	9,828,593	75.6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9억 9,357만 1천원 보다 98억 2,859만 3천원이 증가(75.6%)된 228억 2,21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요인은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기인함
-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별책), 사업예산이 34억 5,347만원 이며, 자본예산이 72억1,26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2,572만 7천원이 증액된 총106억 6,611만원이며, 증액 주 요인은 웅양, 남상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사업으로 증액되었음
- 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별책), 사업예산이 121억 4,908만 8천원이며, 자본예산이 41억 5,590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84억 7,519만 1천원이 증가 총 163억 499만2천 원이며, 증액 주요인은 둔마, 응곡, 웅양·가조,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위탁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비사업 증가분에 따른 것임

## 1. 마을상수도 염소소독기 설치사업(P283)

135,000천원

- 마을 상수도 수질불량으로 인한 군민보건 건강 확보하기 위해 염소소독기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향후 필요한 개소수 등 설명이 필요함

## 2.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p283)

120,000천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지하수(암반관정)를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 확보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생활 용수 5개년 계획이 완료되어 광특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전년대비 88% 감소함

## 3.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p284)

2억7,066만6천원

- 상수도보호구역내 개발제한 등 주민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용.배수로 정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 내부거래 지출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 : 4,629,232천원 (p286)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 : 12,272,596천원 (p286)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액	2012예산액	증(△)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720,751	489,696	231,055	47.18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억 8,969만 6천원 보다 2억 3,105만 5천원이 증액(47.18%)된 7억 2,07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그 주 요인은 역사교육관 계단보수비 7천 8,704천원, 거창사건 제작영화 홍보비 5천만원 등에 기인함

### 1. 거창사건 영화홍보 (p.382)

**50,000천원**

○ 거창사건 제작영화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제작과 관련 그동안 추진한 사항 등 설명이 필요함

### 2. 추모공원 조성관리 (p.290)

**403,299천원**

○ 거창사건 추모공원 조성 및 합동묘역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국화전시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보수비 등을 편성한 것임.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 12. 6. ~ 11.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 검 토 보 고 서 ]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장정옥 ]

<의안번호 제2012 - 90호>

# [ 2013도 기금운용 계획안 ] [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12. 11. 16(금)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2. 11. 19(월)

##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 3. 기금조성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중소기업육성기금	4,637,079	657,619	-	657,619	5,294,698
옥외광고정비기금	44,098	21,364	-	21,364	65,462
재난 관리 기금	773,941	810,500	798,024	12,476	786,417

## 4. 검토의견

### 〈경제과 소관〉

#### 【중소기업육성기금】 (p35)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 2005년도 6월부터 설치하여 적립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치금 4,637,079천원, 이자수입 157,619천원으로 총 5,294,698천원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도시건축과 소관〉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p40)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로 제정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적립목표액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0천원, 이자수입 1,364천원, 예치금 44,098천원 총65,462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 재난관리과 >

### 【재난관리 기금】 (p44)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3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 회수 773,941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10,000천원, 보조금 465,000천원, 이자수입 35,500천원으로 총 1,584,441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3개 사업에 355,000천원, 소규모 재해해소 사업 423,024천원 등에 지출할 계획임
- 모든 기금은 법정적립금 확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참고자료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